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11.2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 제2조 및 별표1에 규정된 학사과정 설치 학과(부)에 적용한다.

제3조 (원칙) 학사구조개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우리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구현을 위한 조치
2.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
3.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수행

제4조 (운영기구) ①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'미래전략위원회' 에서 관장한다.

② 학사구조개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시, 내·외부 전문가를 미래전략위원회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회의 및 의결은 미래전략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

제5조 (절차) ①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사구조개편 대상 선정 및 계획(안) 수립
2. 학부(과) 의견 수렴
3. 재학생, 교직원, 동문 등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
4. 교무위원회 심의
5. 대학평의원회 심의
6. 결과 통보 및 관련 부서 후속조치 시행

② 학사구조개편 대상 선정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.<신설 2017.11.2>

제6조 (폐지 및 통합 학부(과)의 교원 및 학생) ① 학사구조개편에 따라 폐과가 결정된 학부(과)의 전임교원은 다른 학부(과)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폐지 또는 통합이 결정된 학부(과)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 학부(과)의 재적생으로 본다. 다만,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부(과)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

③ 기타 세부사항은 학칙 및 내부 지침을 따른다.

제7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<신설 2017.11.2>

학사구조개편 대상 학과 선정 평가지표

구 분	반영비율	평가지표	
정량평가 (학부(과) 평가 준용)	80%	교육	취업률
			강의평가점수(평균)
			현장실습 참여 학생비율
			중도 포기율
			재학생 만족도
		연구	교수당 SCI급/SCOPUS 학술지 게재 수
			교수당 연구재단등재지(후보포함) 게재 수
			기술이전 건수/수입료(50%) 및 특허등록 건수(50%)
			교수당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
			교수당 저서 수
		국제화	파견교환학생 수 비율
			외국인 학생비율(학위목적)
			영어강좌 비율
정성평가	20%	학부(과) 발전방안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부합정도(실적 및 계획)	

평가반영 대상기간의 평가결과 반영비율

평가반영 대상기간	당해년도	전년도	전전년도
비 율	50%	30%	20%

* 상기 평가반영 대상기간의 평가결과 반영비율은 정량평가만 적용(정성평가: 당해년도 100%)

학사구조개편 평가결과별 정원조정 비율

평가결과	정원조정 비율
S등급(상위 15%이내)	정원 유지
A등급(상위 15~40%)	정원조정 목표 인원의 20% 비율에 해당하는 정원 축소
B등급(상위 40~70%)	정원조정 목표 인원의 30% 비율에 해당하는 정원 축소
C등급(상위 70%이하)	정원조정 목표 인원의 50% 비율에 해당하는 정원 축소 또는 통폐합 검토